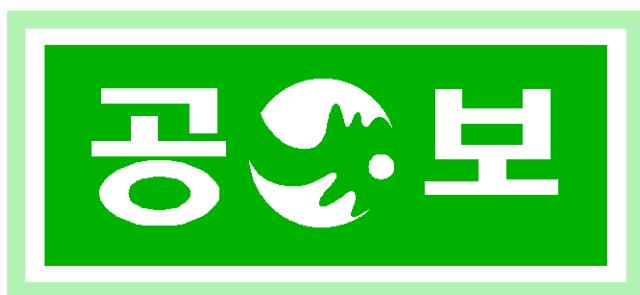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692 호 2011. 6. 8(수)

## 공 고

○ 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394호[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(☎ 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 394호

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1년 6월 8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(2011. 3. 9.)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일부조문 변경
- 나.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(안 제9조)
- 나.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- 다. 당연직 위원 조항 삭제
- 라. 도시계획위원회 해촉사유 신설

##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 내지 제114조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3조 내지 제114조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28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도시녹지과장, 전화 : 219-7426 팩스 : 219-743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 사항 등

#### 5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조례」 일부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구 도시녹지과에 배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